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9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7. 5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□ 제안이유

복지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 지침 (정기도 기획 12200-10969, 2001. 5. 9)에 의하여 신규정원이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 골자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규정(안 제2조)

- 총 정 원 : 795명 → 798명 (증 3명)
- 집행기관 : 777명 → 780명 (증 3명)
- 의회사무기구 : 18명 → 18명

나. 부칙중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(안, 부칙 제2조)

- [표2]의 정원총수 797명 → 800명
 - 집행기관의 정원 779명 → 782명

※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승인 내역

- 지방사회복지 9급 3명 증원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795명”을 “798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호중 “777명”을 “780명”으로 한다.

부칙 제2조[표2]중 정원의 총수란 “797명”을 “800명”으로 하고, 1. 집행기관의 정원란 “779명”을 “782명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총 무 과 940-4127
입 안 자	총 무 과 장	홍 덕 기
	시 정 담 당	김 규 범
	담 당 자	김 영 준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
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795명</u>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777명</u> 2. (생략) 부칙 제2조(생략) [별표2]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<th>정원</th></tr> <tr> <td>정원의 총수</td><td><u>797명</u></td></tr> <tr> <td>1. 집행기관의 정원</td><td><u>779명</u></td></tr> <tr> <td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</td><td>18명</td></tr> </table>	구분	정원	정원의 총수	<u>797명</u>	1. 집행기관의 정원	<u>779명</u>	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18명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798명</u> ----- -----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780명</u> 2. (현행과 같음) 부칙 제2조(현행과 같음) [별표2]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<th>정원</th></tr> <tr> <td>정원의 총수</td><td><u>800명</u></td></tr> <tr> <td>1. 집행기관의 정원</td><td><u>782명</u></td></tr> <tr> <td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</td><td>18명</td></tr> </table>	구분	정원	정원의 총수	<u>800명</u>	1. 집행기관의 정원	<u>782명</u>	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18명
구분	정원																
정원의 총수	<u>797명</u>											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	<u>779명</u>																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18명																
구분	정원																
정원의 총수	<u>800명</u>											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	<u>782명</u>																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18명																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종가정조례인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복지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 지침(경기도 기획 12200-10969, 2001. 5. 9)에 의하여 신규정원이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)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규정(안 제2조)

- 총 정 원 : 795명 → 798명 (증 3명)
- 집 행 기 관 : 777명 → 780명 (증 3명)
- 의회사무기구 : 18명 → 18명

나) 부칙중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(안 부칙 제2조)

- [표2] 의 총 정원수 797명 → 800명
 - 집행기관의 정원 779명 → 782명
-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승인 내역
 - 지방사회복지 9급 3명 증원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지방자치법

제 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제 14조 (표준정원의 책정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·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 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하여야 한다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하여 신규정원(지방사회복지 9급 3명)이 승인되었기 관련조례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.